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참여가능” 부가통신사업 신고요령

송 윤 호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설비의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종류와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다.

부가통신사업의 제도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설비의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종류와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화역무·가입전신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부가통신사업은 규제완화를 위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95년 4월부터 전환되었으며, '95년 12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수는 314개사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

업신고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 경미한 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단순 정보검색(DB)·정보처리(DP) 및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신고만 하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외국인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가 허가의 취소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법인의 경우, 상기 ①내지④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이다.

〈표 1〉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예

부 가 통 신 역 무	1. 데이터단순전송	데이터회선재판매	국내데이터회선재판매
			국제데이터회선재판매
	2. 부가통신망	PC 통신서비스	
		전자우편	국내전자우편 국제전자우편
		신용카드검색	국내신용카드검색 국제신용카드검색
		컴퓨터예약(CRS)	
		전자문서교환(EDI)	
		원격통신	원격검침 원격안전관리
	3. 데이터베이스(DB)	DB 제작 및 판매	수탁 DB 제작 Batch DB 판매
		DB 검색	국내 · 국제 DB 검색
		정보제공(IP)	
	4. 정보처리(DP)	온라인 데이터처리	
		오프라인 데이터처리	
	5. 음성전화정보서비스	전화사서함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700)	
	6. 주문형정보서비스	주문형영상정보서비스	
		기타주문형정보서비스	

신고절차

부가통신사업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사업계획서 ②신고인의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이사 · 감사의 호적등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다) ④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⑤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각 1부이다.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시밀리)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 경우 접수되며, 접수시 기재사항이나 구비서류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이에 응

해야 한다. 신고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고는 접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서류의 작성

부가통신사업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성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개요 · 연혁 · 인원 및 조직현황 등 회사의 일반사항과 3개년 매출 · 투자 · 인력수급계획 등 제공서비스별 사업계획 또는 영업계획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인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업용 주요설비 설치내역 및 통신망도는 가능한한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데이터 보호기능이다. 사업용 서비스는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경우 자료별로 사용자에 대한 접속 기능 영역 및 취급 범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데이터의 보관상태다. 데이터는 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 보관함에 보관될 수 있어야 하며, 보관실 또는 보관함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의 폐기 과정의 적정성이다. 데이터는 유출될 위험성이 없도록 완전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신뢰성의 확보다. 중요한 데이터는 복원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직 상호간 장애감지기능 및 장애발생시 대체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입자 관리상태의 유지다. 정보통신센터의 출입구에는 출입관리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전기배선 등이다. 주요장비의 배선은 독립된 전용전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기조화설비는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센터의 설비에 대한 년 2회이상 정기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변경신고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던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부가통신사업자의 상호·명칭·주소, 대표자·이

〈표 2〉 부가통신사업의 변경 등 신고시 구비서류

신 고 종 류	구 비 서 류 목 록
가.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별지5호서식)외
상호·명칭·주소 변경 대표자·이사·감사변경 제공역무의 종류변경	- (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 법인등기부등본
	- (개) 변경인의 호적등본 - (법) 법인등기부등본
	-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나. 사업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신고서(별지6호서식)외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사 및 감사)의 호적등본(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류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다. 법인의 합병 신고	○ 합병신고서(별지7호서식)외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대표자·이사 및 감사의 호적등본(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류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신고	○ 상속신고서(별지8호서식)외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상속인의 호적등본 1부
마.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 (휴지·폐지·해산)신고서(별지8호서식)외 - 이용장에게 휴지·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법인의 해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감사 및 제공역무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부가통신사업의 양도 · 양수가 발생한 경우 ③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④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 ⑤부가통신사업을 휴지 ·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표 2>와 같다.

신고기간은 양도 ·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예정일 30일전까지, 법인의 임원이 경질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이다.

국제업무협정에 관한 승인신청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제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당해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처 분 기 준	과 정 금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때	법 제 28 조제 1 항제 1호	사업폐지	
2.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사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법 제 28 조제 1 항제 1호	사업폐지	
3. 부가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법 제 28 조제 1 항제 3호	사업폐지	제 24 조제 4 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3월이내에 임원을 개임한 경우 예외
4.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 65 조제 1 항제 2 호	사업정지 3월	500만원
5.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 65 조제 1 항제 3호	사업정지 3월	500만원
6.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법 제 28 조제 1 항제 6 호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3월	500만원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사업자와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인신청시 구비서류는 협정체결의 경우에는 국제업무협정승인신청서와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협정서 국문번역본이며, 협정변경의 경우에는 국제업무협정변경승인신청서와 협정폐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 중단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이 경우 폐지 30일전까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국제업무협정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서비스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가간 특별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 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와 국제부가통신서비스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업무협정의 승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승인이 불가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불가 사유를 보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제정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 이용약관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

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역무 제공 또는 통신망 상호접속을 위하여 데이터망식별번호(DINIC)등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1/3 이상이 2시간이상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이유 또는 원인을 지체없이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밖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분·처벌

부가통신사업자가 관련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벌이 부과된다.

처분 및 처벌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으로 한다. 처분에는 시정명령, 사업폐지, 사업정지가 있으며, 처분권자는 관할체신청장이다. 사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표 3>과 같다.

또한, 중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미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협회간행물판매

협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판 또는 시내 유명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총 판 : 도서출판 진한도서(전화 : 319-3535)
- 간행물 목록
 - '94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10,000원/ 권)
 - 외국의 정보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및 현황 자료집(I, II)(100,000원/ 권)
 - 최신판 정보통신용어해설집(6,000원/ 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업무편람(25,000원/ 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준(25,000원/ 권)
 - 기타 협회 발행 간행물